

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3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14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도시정비기금의 **존속기한이 2023. 12. 31.자로 종료됨**에 따라 도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**존속기한 연장**을 위한 조례개정

주요내용

-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(안 제2조의2)
 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8년 12월 31일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련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2023. 6. 7. ~ 2023. 6. 27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4】
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[붙임 1]

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2023년까지 총 508억원” 을 “2028년까지 총 658억원” 으로 한다.

제2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 을 “2028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제5조 중 “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” 를 “「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” 로, 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” 를 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 을 준용한다.” 를 “「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 을 적용한다.” 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관계규정의 준용등)” 을 “(기금의 관리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중 “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 을 준용한다.” 를 “「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 을 적용한다.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도시계획과
입	실과장	도시계획과장
	직위·성명	오 현 갑
안	담당·팀장	도시계획팀장
	직위·성명	이 광 재
자	담당자	원 순 희
	성명·전화	(행정 2376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재원) ① (생 략)</p> <p>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 (일반회계, 교통사업특별회계 등)은 2023년까지 총 508억원을 매년 30억원씩 출연한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재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<u>2028년까지 총 658억원</u>----- -----.</p>
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----- -----<u>2028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
<p>제5조(기금의 심의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심의는 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심의)----- -----<u>「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</u>----- <u>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-----.</p>
<p>제12조(회계관리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2조(회계관리)----- -----<u>「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적용한다.</u></p>
<p>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4조(<u>기금의 관리</u>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<u>「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적용한다.</u></p>